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69회 정례회
'18. 11. 23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형용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05일

3. 제안사유
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개정(2018. 9. 21.)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·관 협치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3조)

나.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(안 제4조)

- 의장 : 위촉직 위원 중 호선, 부의장 : 위촉직 위원 중 의장 지명

다. 지역혁신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분과협의회 설치·운영 (안 제7조)

라. 지역혁신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10조)

마.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수립, 포럼·토론회 운영 등을 담당할 지역혁신연구회 설치 (안 제13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)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이하 ‘시행령’이라 함)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·관 협치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※ 현재 충청북도는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시행 2018. 9. 21.)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년 10월 17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기 구성하고 출범식을 마친 상태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4, 5, 6조는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 - 위원구성 (당연직 위원 : 기획관리실장)
 - 회의 소집·운영 (정기회 : 반기별 개최, 임시회 : 의장 및 도지사의 요구 시)
 -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
- 안 제7조는 법 시행령 제32조제8항에 따라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0조는 지역혁신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13조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수립, 포럼·토론회 운영 등을 담당할 지역혁신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,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·관 협치 기구인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-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내시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, 입법예고 및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내용 및 절차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